

당내경선 합동연설회 등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

I

법규요약(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제57조의3)

□ 개 최

- 주 체: 정당
- 대 상: 경선험동연설회 또는 경선험동토론회
- 장 소: 옥내장소
- 기 타: 당해 정당이 정한 바에 의함

※ 경선험보자는 합동연설회 등이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(옥외를 말함)에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(10m² 이내)을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개 이내에서 설치·게시가능하되, 애드벌룬과 기구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설치·게시 금지

□ 신 고

- 주 체: 정당
- 시 기: 개최일 전일까지(변경 시 개최시각 전까지)
- 신고처: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
- 방 법: 규칙 별지 제15호의2시식의(다)에 따라 제출

II

주요선례

할 수 있는 사례

- 정당이 경선험보자 합동연설회 개최에 대하여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정당의 경선험위원회 명의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행위
- 정당이 중앙당 또는 시·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

-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방송사 스튜디오(옥내에 한함)에서 개최하고, 이를 방송사나 언론사가 공정하게 취재·보도하는 행위
-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공정하게 취재·보도(중계방송 포함)하는 행위
 - ⇒ 다만, 언론기관이 중계하는 경우 합동연설회의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 함
- 언론기관이 법 제82조제1항[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]에 따라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
-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진행·사회·질문내용의 선정 등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·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는 행위
-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선거인에게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
 - ⇒ 다만,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됨
-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나 경선운동관계자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합동연설회장에서 참석한 당원 또는 비당원인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
-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·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
 - ⇒ 다만,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이깨띠, 피켓, 현수막, 모자, 티셔츠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은 불가
- 정당이 경선운동기간개시일 전에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경선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강연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
 - ⇒ 다만, 강연회 또는 간담회에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 위반

할 수 없는 사례

-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 등이 합동연설회장 주변에서 이케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
-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
-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하는 방법 등의 경선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
- 경선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등이 경선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
-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아닌 학회·단체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실시하는 행위

< 안 내 >

본 문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·시기·목적·방법·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